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사업위치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산66-2번지 일원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초금액	금225,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계속비사업(26년 연부액 70,000,000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02. (수) 14:00 ~ 2026. 09. 10. (목) 14:00
개찰일시	2026. 09. 10. (목) 15:00
장 소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같습니다.
-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 가격 대비 입찰가격 **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다.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용역 :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 실적 인정규모 추정가격 : **금204,545,455원**
-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최종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청소행정과 ☎ 041-521-5427)의 판단에 의합니다.
-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마. 기술능력 평가의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음)
-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8%)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사.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

- 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 아.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적합한 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 용역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파.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본 입찰은 불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라.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청소행정과 청소시설팀	☎ 041-521-5427
입찰 및 계약관련	천안시 회계과 계약팀	☎ 041-521-529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천 안 시 재 무 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